

의안번호	제75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5
----------	----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제조업 경기악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여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

2. 주요내용

-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안 제4조)
-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첨단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뿌리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실행계획과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약칭: 뿌리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여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경쟁력 제고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충북뿌리산업협의회 분과운영 등 자립화 지원
- 우수 뿌리기업 및 유공자 해외전시회 등 참가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13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4. 비용 추계결과(년도별)

가. 추계의 전제 :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인력양성

나. 추계 결과

- 도내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800,000천원
- 고용연계형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 5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장 정경화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출	5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5,700,000
경쟁력 강화 지원	5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700,000
전문인력 양성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